

<국어기본법> 10년을 되돌아보면서

박창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언어와 문자는 인간의 정신적인 생존과 문명의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간은 육체적인 생존을 위해 공기와 물 그리고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정신적인 활동을 위해 언어와 문자를 필요로 한다.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치관을 생성하는 데에는 언어와 문자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대략 5,000년 전쯤에 우리 민족은 단일한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인근 민족이 사용하던 한자를 수용하여 문자 생활을 시작하였다. 한자의 구성 성분인 ‘형(形), 음(音), 의(意)’ 중 때로는 전체를 빌려 와 중국에서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과 ‘의’ 중 한 부분만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모양을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면서 문자 생활을 해 왔다. ‘음(音), 위(爲), 시(是)’ 를 예로 들어 보자. 이 글자들은 본래의 모양과 음, 뜻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음(音)’은 그 소리를 취해 음절의 말음 [m]을 나

타내기 위해, ‘위(爲)’는 그 뜻을 취해 ‘ㅎ-’라는 한국어 동사를 표기하기 위해, ‘시(是)’는 그 뜻을 취하되 본래의 뜻을 버리고 음만 빌려 와 주격 조사 ‘-이’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리고 이들 문자의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간략하게 바꾸어 ‘위(爲), 시(是)’를 ‘ㄱ, ㅅ’ 등으로 썼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자 생활은 대단히 불편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1444년 1월(음력 1443년 12월)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의 문자 생활은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그 후 20세기의 교체기에 문자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토론 끝에 합의점을 만들어 1933년에 <한글마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통일되고 체계적인 문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대체로 5,000년 전에 단일한 언어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국가적으로 분단과 통일을 거듭하면서 언어생활에서도 분열과 통합 현상을 복합적으로 겪으면서 살아왔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국어, 몽골어, 서구 언어, 일본어 등 외국어가 지속적으로 때로는 필요에 의해, 때로는 강제로 수용되어 우리 언어 속에 수많은 외래어 요소가 더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해방 후 약 70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세계의 한 축이 되면서 민족과 언어 정체성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언어 의식 및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배경, 세계 속에서 우리말이 차지하는 위상 등 바뀌고 있는 국어 환경에 부합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인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써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어기본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하

는 등 국어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 지 이제 10년이 되었다.

이 글은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을 맞이해 <국어기본법>이 만들어진 경위와 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의 2장에서는 <국어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되새겨 본다. 제정 경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이전의 초기 단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3장에서는 <국어기본법>을 제정한 성과를 제1차 발전 계획의 성과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과제와 함께 논의한다. 4장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앞으로 <국어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마무리를 한다.

2. <국어기본법> 제정 경위와 내용 그리고 의의

2.1. 제정 경위와 취지

2.1.1. <국어기본법> 이전의 논의

<국어기본법>의 초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민간이 주도하여 국어에 관한 법을 만들려 했다. 이러한 경위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국어기본법>에 관한 논의는 2000년 초에 남영신(현 국어단체연합 대표) 선생이 당시 국어정책과 김수연 과장에게 국어에 관한 법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당시 국어정책과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영신 선생은 의원 입법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했다. 2001년에 당시 국립국어원 원장이었던 남기심 선생과, 한글학회 허용 이사장 등의 협조로 지도 위원과 간사를 두게 되었다. 지도 위원은 ‘남기심

원장 추천 위원'으로 김하수(연세대), 박창원(이화여대), 송철의(서울대), 홍종선(고려대), 한동완(서강대) 등 5명과 '허웅 이사장 추천 위원'으로 배해수(고려대), 김정수(한양대), 유재원(한국외국어대), 조오현(건국대), 최기호(상명대) 등 5명, 그리고 '남영신 대표 추천 위원'으로 김동언(강남대), 박경희(케이비에스), 박종만(까치출판사), 최인호(한겨레신문), 홍영호(변호사) 등 5명으로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간사 2명을 두게 되는데 국립국어원 측 간사는 정희창 학예 연구사가, 그리고 한글학회 측 간사는 김한빛나리 선생이 맡고 남영신 선생이 총괄했다.

그리하여 남영신 선생과 간사가 몇 차례 모여 <국어진흥법> 초안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지도 위원 회의를 거쳐 법의 이름을 바꾸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법안의 발의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국어 관련자들의 서명을 받은 뒤에 의원을 선정하여 입법을 부탁하기로 결정했다. 국어 관련자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학계의 의견을 두루 수용하는 도중인 2002년 6월에 당시 김수연 과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제안 법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남기심 원장과 허웅 이사장의 동의 아래 <국어진흥법안(가칭)>을 국어정책과장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2002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어기본법(초안)>을 만들어 보내왔다. 이를 당시 관련자들이 축조·심의하여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냈다.

2.1.2. <국어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취지

2002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식·정보·문화 국가의 기반 구축을 위한 국어 발전 종합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우리 말과 글에 대하여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 예술 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어 사용의 진흥에 관한 기본 법령의 부재로 인해 국어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과제를 대두시키고, 기존 국어 정책의 점검을 통한 새로운 정책의 틀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 되었으므로 국어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정보·문화 강국을 구현하기 위해 '국어 발전 종합 계획 시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위한 별도의 장기 과제로 <국어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국어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국어 진흥·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 말에 <국어기본법> 초안을 만들어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방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4년에 이 초안은 국무 회의를 통과하여 행정부의 안으로 만들어졌다. 2004년에 국회로 이송되어 청문회를 거쳤으며, 2004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5년 1월 27일자로 대통령이 법을 공포했다. 그리고 그해 시행령이 만들어져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2.2. 내용

2005년에 제정되고, 2011년에 개정된 <국어기본법>은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5장 27조로, 제1장은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총칙이다. 제2장은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3장은 국내외에서의 국어 사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우리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5장은 보칙으로 부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에서는 '기본 이념', 제3조에서는 '국어, 한글, 어문 규범, 국

어 능력'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를 서술하고, 제5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기술했다. 이에 명시된 목적과 이념은 다음과 같다.

- (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

제2장은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제6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제8조에서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장은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어문 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제12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어문 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 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 내용을 ②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리고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③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는 “공공 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18조에서는 국어 문화의 확산에 관한 문제, 국어 정보화의 촉진에 관한 문제,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문제, 교과용 도서의 어문 규범 준수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제19조에서는 한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세종학당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그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
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및 교재 보급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0조에서는 한글날과 관련된 내용을, 제21조에서는 “국어의 발전
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4장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22조에
는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시행 등에 관해, 제23조에는 국민의
국어 능력을 검정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24조에
는 민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국어문화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
고 있다.

제5장은 보칙으로 국어 정책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상
(제25조), 국어문화원의 위상 확보(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
한 위임(제27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2.3. 의의

〈국어기본법〉이 만들어진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존재 그 자체에 관련된 것이고, 다음은 국어 정책의 수립 계획안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은 계획을 수행하는 주체와 관련된 것이다.

2.3.1. 존재 그 자체

〈국어기본법〉의 가장 큰 의의는 ‘〈국어기본법〉이 존재한다.’ 그 자체일 것이다. 생각이나 감정, 제도 등은 존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어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나 시행착오 등은 〈국어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존재는 〈국어기본법〉의 존재를 위한 참여물이 되는 것이다. 〈국어기본법〉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개선할 점도 많지만 〈국어기본법〉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국어의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의의가 되는 것이다.

2.3.2. 장단기 계획의 조화

〈국어기본법〉이전에는 국어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이 없었다. 국어 정책에 관한 유일한 국가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연간 사업도 당해 연도를 위한 단기 계획뿐이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에서 장기적인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국어 정책이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2.3.3. 민관의 협력 강화

〈국어기본법〉에 의한 국어 발전 장기 계획을 국어심의회가 심의할 하게 함으로써 많은 민간인이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의견을 종합할

기회를 만듦으로써 실질적으로 계획의 관리에 중심이 되어야 할 공무원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장을 만들게 되었다. 대학의 연구소 등 민간기관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하여 이들이 국가의 국어 정책에 관련된 일부의 일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상설 통로의 역할을 맡게 했다.

3. <국어기본법> 10년의 변화

3.1.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국어기본법>의 가장 큰 의의는 실정법으로 명문화해 국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제1차 기본 계획의 수립 과정과 경위, 그 내용에 관해서는 조남호(2007)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인용해 보기로 한다.

2005년은 국어 정책에서 중요한 해이다. 2005년 1월 27일 자료 <국어기본법>이 공포되었으며, 7월 27일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국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 법 제6조 1항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2006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5개년 계획의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그런 만큼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06년 6월 초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하였다. 전담 팀에

서는 먼저 <국어기본법>의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여 계획의 성격, 계획에 담은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2004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창의 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을 참고 자료로 검토하였으며, 원내의 6개 팀에서 각 팀이 담당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 계획 초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초안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성 양식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리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각각 해당 팀을 선정하여 그 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였다. 전담 팀에서 만든 양식에 따라 각 팀에서 세부 사업별 초안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8월 22일 국립국어원 내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작성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토론을 하였다. 팀별로 수정한 초안을 가지고 9월 11일에서 14일까지 4일간 경기도 양평에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각 팀별로 1인이 참석한 워크숍 기간 동안 3인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 전략과 미래상(비전)을 세우고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워크숍을 마친 후 워크숍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전담 팀에서는 기본 계획 초안을 최종 정리하여 9월 18일 1차로 안을 완성하였다. 이 안에 관해 외부에 자문을 구했다. 자문은 서면 검토와 회의 개최 검토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서면 검토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외부의 전문가 5인에게 의뢰하였다. 이와 별도로 9월 25일 외부의 전문가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외부 자문 결과에 따라 기본 계획 초안을 수정한 후 3회에 걸쳐 국어심의회회의 검토를 거쳤다. 9월 27일 국어심의회 전체 위원회와 언어 정책 분과 회의에서 1차 검토를 하

였다. 지적 사항이 많아 국어심의회를 더 개최하여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 국어심의회 3개 분과별로 5인 이하의 대표단을 선출하여 국어심의회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0월 27일 열린 실무 위원회에서 수정된 기본 계획안을 검토하였으며 새롭게 많은 것이 지적이 되었다. 안을 다시 수정하여 11월 21일 국어심의회 실무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였다. 최종 심의를 거친 안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 계획 최종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12월 29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었다.

그리하여 발전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 구현과 실효성 제고
- 사회 통합적 언어 복지 시책 확대 시행
- 국제화·다문화 사회를 포용하는 다원주의 언어 규범 정립
- 국어 사용 환경의 점진적 개선과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 지식 정보 문화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국어 정보화 사업의 지속 추진
-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 국어 문화유산 발굴과 지역어·토착어 조사 사업 확대

2012년 시작되어 2016년에 끝나는 제2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과제의 내용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세부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V. 5대 추진 과제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 1-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 1-2.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 1-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 2. 공생 공영의 국어 문화 확산
 - 2-1. 언어적 소외 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 2-2.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 2-3.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 3. 공공 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 3-1. 공공 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 3-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 4-1. '세종학당' 확대·운영
 - 4-2.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4-3.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 5.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 5-1. 한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 5-2. 언어 정보 자원 통합 관리
 - 5-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제1차와 제2차를 비교해 보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 과제와 수행하려는 내용 등이 크게 바뀌어 있는데, 장기 계획의 수립과 실천하려는 의지 그 자체가 국어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제1차 발전 계획의 성과 및 그 후

제1차 국어 발전 종합 계획의 수립으로 국어와 관련된 많은 분야에
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그 내용을 제2차 국어 발전 종합 계획에
정리되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한국어 세계화

한국어 세계화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세종학당의 설립 및 세
종학당재단의 설립이다. 세종학당은 국립국어원에서 개설하였는데,
그 설립 목적을 “①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쌍방향의 문화 교류
와 이해 촉진, ② 지식인 중심의 엘리트 교육에서 탈피, 대중적 한국어
교육의 확대, ③ 국가 간의 문화적 연대와 공존을 위한 교류 협력 증진”
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초기의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의 4개국
에서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바
탕으로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몽골의 교육문화과학부, 국립사범
대학 울란바토르대학, 그리고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 중앙민족
대학과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그리하여 2007년 3월에 몽골 울란바
토르대학과 국립사범대학의 2개교에 세종학당이 개원하게 되었다.
이어 5월에는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대학들과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 협정을 체결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인문대학,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우즈베키스탄의 니자미 국립사범대학과도
업무 협정을 체결하거나,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7월에는 중
국 천진 외국어대학교와의 업무 협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에 아주 조그만 규모로 출범한 세종학당은 2012년 9월 기준으로 유럽 10개국에 16학당, 아시아 19개국에 56학당, 북아메리카 3개국에 7학당, 아프리카 4개국에 4학당, 오세아니아 2개국에 2학당, 남아메리카 5개국에 5학당이 분포하여 전 세계 43개국 90개의 세종학당이 운영되었다. 3년 뒤인 2015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에 걸쳐 54개국 140개가 개설되어 있다. 이렇듯 한국어의 해외 보급 내지는 한국어의 세계 언어화를 목표로 하는 세종학당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 해외 보급과 관련된 일들은 초기에는 민간인들이 힘을 모아 2001년 1월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을 설립하여 관장하였는데, 2012년 12월에 국가의 특별 법인으로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되면서 해외 보급에 관한 일은 이 기구가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이 기구는 한국어 세계화와 관련된 일, 특히 세종학당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다. 이 기관의 수행 업무는 그 누리집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 운영
-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및 교재 보급
-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 교육 및 홍보 사업
-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어의 세계화 내지는 세계에서 한국어 진흥과 관련된 일은 국가 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진흥과'를 설치하여 연구와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외에도 한국어 해외 보급과 관련된 사업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역할 분담은 국민 세금의 효과적인 사용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3.2.2. 공공 언어 개선

제1차 발전 계획의 성과로는 공공 언어의 개선을 꼽을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업적들이 나열되고 있다.

-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특별반 운영(연 2회)
- 행정 용어 순화 시스템 자료 제공(빠른 교정, 선택 변환 시스템)
- 공무원 국어 사용 지침서, 차별적 표현 개선 안내서, 방송 언어 안내 지침, 신문 언어 안내 지침, 통신 언어 교육서 등 발간·배포
- 공공 언어 개선 토론회 개최(연 1회)
- 방송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 사용 조사 및 결과 발표(매월)
- 공공 기관 언어 표현 개선 지원(연평균 66건)
- 방송 언어 개선을 위한 방송사 공동 토론회 개최(연 1회)
- 국어책임관 직무 연수 개최(연 1회)
- 교과서 감수 지원(연평균 1,500건)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세청,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업무 협정으로 공공 언어 개선 확대
- 공공 언어 개선 민간단체 지원

이러한 사업에 이어 2014년에는 ‘바른 언어, 고운 언어,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언어생활·언어문화를 바르고, 곱고, 품격 있게’ 하고, ‘문화 융성의 토대로서 우리 말·글의 가치 제고’를 위해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한 언어문화 개선 범국민 연합’을 결성하여 이 방면에 관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2.3. 국어 사용 환경 조성

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어문 규범의 영향을 평가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2010), ‘외래어 표기법 영향 평가’(2010), ‘문장 부호 규정 영향 평가’(2010), ‘표준어 영향 평가’(2011) 등 어문 규정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준어에 관한 규정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제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복수 표준어를 상당히 인정하는 것도 바뀐 점 중의 하나가 된다. 예를 들어 ‘간지럽히다, 남사스럽다, 등물, 맨날’ 등 11개의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길래, 떡거리, 연신, 메꾸다, 눈꼬리’ 등 25개의 별도 표준어를 지정하고, ‘택견, 품새, 짜장면’ 등 3개의 표기를 인정하였다.

국어 생활 종합 상담실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어문 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상담이 연평균 4만 5,000여 건에 달하는 것은 국어 사용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아도 좋을 것이다.

3.2.4. 국어사전 편찬 분야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편하게 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인터넷판 전환이 될 것이다. 표기법에 관한 문제, 발음에 관한 문제, 표준어 관련 문제 등 국어에 관련된 많은 사항들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말 사용의 편의 제공이라는 면에서 크게 인식되어야 할 사항이다.

국어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나의 사전 편찬이 완성되는 시점은 새로운 사전 편찬의 시발점이라는 점이다. 언어는 살아 있는 생물체와 같아서 환경에 맞추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담는 수정 작업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언어의 사전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문화의 집대성이자 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집대성하고 그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 크고 더 깊이 있는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도 덧붙여 둔다.

3.2.5. 한글박물관 건립과 세계문자박물관 착수

〈국어기본법〉의 제정으로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이루어진 큰 결실 중의 하나가 ‘한글박물관’의 건립이다. 한글박물관의 전신은 2001년 5월에 당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구축한 ‘디지털 한글 박물관’이다. 당시에는 예산 부족으로 사이버 공간에 한글박물관을 구축했다가, 2010년 5월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부지를 확보, 박물관 건물의 건축에 들어갔다. 이후 3년간의 공사로 마침내 2014년 국립한글박물관을 개관했다. 이로써 세계에서 으뜸가는 문자인 한글의 역사와 의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글박물관 완공 후 2015년에는 ‘세계문자박물관’을 만들기로 하였다.

문자와 관련된 박물관의 건립과 같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 역시 <국어기본법> 시행의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3.3. 지방 자치 단체의 국어 발전 계획 수립

<국어기본법>의 또 하나의 성과는 이 법이 지방 자치 단체에서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산광역시이다. 부산시에서는 2015년 1월에 ‘부산시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시는 민선 6기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성을 높이고 ‘바르고, 곱고, 품격 있는’ 시민들의 언어생활을 통해 문화용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 계획은 한글과 한국어가 ‘문화용성’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시민 및 공무원 국어 능력 향상, △ 공공 언어 개선을 통한 시민 소통성 제고, △ 언어적 소외 계층에 대한 언어 사용 불편 최소화, △ 부산 지역어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부산 지역어 진흥, △ 언어문화 개선 운동으로 국어 위상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시민 및 공무원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 공무원 맞춤형 국어 전문 교육 강좌 개설·운영, △ 시민 국어 교육 강좌 개설·운영, △ 어린이·청소년의 올바른 언어 사용 유도를 추진한다.

공공 언어 개선을 통한 시민 소통성 제고를 위해서는 △ 구·군 국어 책임관 활성화, △ 공공 언어 사용 실태 전수 조사, △ 공공 언어

순화 실시, △ 알기 쉽고 바른 공공 언어 사용 운동 전개를 실시한다.

또 언어적 소외 계층에 대한 언어 사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문화가족 등 소외 계층 언어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 및 학습 기반을 구축하며, 비문해 어르신 등의 교육을 강화한다.

부산 지역어 진흥을 위해서는 △ 부산 지역어 전수 조사를 통한 자료 구축, △ 부산 지역어 경연 대회 개최 및 지원, △ 부산 지역어를 활용한 관광 상품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어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 바른 말·고운 말 쓰기 범시민 운동 전개, △ 옥외 광고물 국어 사용 정착, △ 개인 사업자 및 민간 기업의 국어 사용 정착 및 유도를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 계획을 토대로 바르고 쉬운 국어의 사용으로 시민 간의 ‘통합’(학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전문가와 비전문가, 구세대와 신세대 등), 부산시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어렵고 낯선 정책명, 제도명, 사업명을 쉽게 쓰기)이 원활하게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부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부산 말(사투리)을 보존해 후손에게 계승하고 부산 말(사투리)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등 국어 문화 발전으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ttp://www.busan.go.kr/BoardExecute.do?pageid=BOARD00208&command=View&idx=60941&schField=title&pageIndex=5>)

4. <국어기본법>의 개선 방향

<국어기본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표현 등에 관한 내적인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법을 다룰 주체 등 환경에 관한 사항이다.

첫째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으나 내용에 대한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방향이고, 다음은 기본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빠져 있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표현에 관한 사항은 문장 자체와 조문끼리 충돌하는 문제이다.

둘째 문제, 즉 환경에 관한 사항은 현재 기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지만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4.1. 내용의 정비

4.1.1. 임의로운 선택과 강제적 필수

<국어기본법>의 많은 규정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발전을 위한 실천적인 수행에 결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그냥 두어야 할 사항과 ‘해야 한다’로 바꾸어야 할 사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적당한 경계선은 무엇일까, 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는 기준점은 무엇인가 등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고쳐야 할 사항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4.1.2. 새로운 내용의 추가

제정 당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관계 부처의 이해관계나 관련 당사자의 민원성 반대로 인해 <국어기본법>에서 빠져 버린 부분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다시 검토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면 되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중의 하나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인데, 초안의 16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제16조(국어 능력 요구 대상자) ① 아래의 사람은 제13조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 소정 수준의 능
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1.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초등, 중등, 고등 교사와 대학 교수
2.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 기관에서 보도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3.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 기관에 고정적으로 기고하거나 출연하는 사람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은 이를 지켜야 할 사람들의 반대로 제정 당시 삭제되었다. 이 조항은 어떤 식으로든 살려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국어와 관련하여 새롭게 대두된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필자는 간단하게 의견 개진을 한 적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4.2. 표현의 정비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의 내용이나 형식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어 문장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곳이 더러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2.1. 내용의 충돌 문제

제6조에서 기술된 아래 (1)의 내용과 제13조 ②항에서 기술된 아래 (2)의 내용은 서로 충돌한다.

(1)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에 의하면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은 ‘기본 계획’의 하위 범주가 되는데, (2)에 의하면 두 내용이 대등한 관계가 된다.

4.2.2. 나열어의 동질성 문제

제6조 3항에 나오는 다음의 표현도 다듬어야 한다.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이 구에서 ‘국민의’는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공유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이 대등한 관계로 나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두 단위의 관계가 매우 부적절하다. 대등한 관계로 나열하기 위해서는 ‘국어 능력의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 정도로 수정하거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2.3. 기본법과 시행령의 유기성 문제

기본법에 의하면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러나 시행령 제8조(분과위원회) ①에는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 가.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 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 라.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마.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 바. 어문 규범에 관한 영향 평가에 대한 사항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이에 의하면 기본법의 1항에 의해 언어정책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기본법의 2항에 의해 어문규범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므로, 남은 3항에 의해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대응 관계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4.2.4. 모순적인 표현 문제

시행령 제4조(어문 규범의 영향 평가) ③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문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문 규범에 관한 영향 평가를 하여야 한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제정’이 ‘처음 만든다’는 의미이므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규범’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조항을 제정할 경우에는 그것이 국민의 언어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3. 환경의 정비

4.3.1. 담당 부서의 조정

〈국어기본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부 전체 부서 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두 관장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관한 일, 이민자에 관한 일, 외국 노동자에 관한 일 등도 국어 정책에 관한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한다. 서로 성격이 다른 일들을 한 부서에서 모두 담당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일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하여 관련 부서에서 분업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일들이 국어 정책이란 면에서 일관성과 보편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는 부서도 필요할 것이다. 부서의 신설 혹은 업무의 협약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보편성과 개별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일이다.

4.3.2.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현실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셈이다. 〈국어기본법〉의 제정 이후 국어 발전 기본 계획에 입각하여 많은 연구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가 해당 분야에

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결과물의 효용성이나 활용성에 대한 검증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물의 활용성이나 효용성을 검증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역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5. 마무리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종속된다. 인간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언어는 존재하는 한 그 사용자를 지배하기도 한다. 어떤 인간이든 사회적 약속으로서 언어를 제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개념을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언어와 사회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언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이 거의 존재할 수 없다.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는 언어에 의존적이다. 하지만 한 언어 공동체가 그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언어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언어는 언어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에 종속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언어와 민족의 흥망성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민족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잘 가다듬고 발전시키면 그 나라의 문명과 문화는 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 그 민족 자체가 망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예는 인류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가장 가깝게는 만주족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청나라의 초기 강희제는 국가 초석을 세우는 여러 정책을 펴고, 언어와 문자도 정리한다(《강희자전》). 그런데 이 언어와 문자 정리 사업은 한족이 사용하던 한자에 국한되었고, 만

주족이 사용하던 언어와 문자에 관한 사업은 전혀 펼쳐지지 않았다. 그 결과 만주족과 만주어는 마침내 소멸되고 말았다. 반대로 영국은 《옥스퍼드 영어사전》 편찬 등 강력한 자국어 발전 정책을 폈고, 이에 힘입어 영어는 세계의 중심 언어로 자리 잡았다.

21세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국어기본법〉이 만들어져 우리말을 다시금 정리하고 보급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법의 제정으로 목적인 일이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의 제정은 해야 할 기본 사항만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 법 자체가 무엇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항을 수행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일들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완성점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국어기본법〉의 성격과 관련하여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말에 관한 것이다. 막말이나 욕설은 인간의 정서를 파괴하고, 애매모호한 말은 인간의 지성을 혼란시키고, 거짓말은 인간관계의 믿음을 파괴하고, 무관심에서 비롯된 침묵은 인간의 착각을 유도하고, 휘황찬란한 말놀음은 인간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좋은 말, 정확한 말, 참말(바른말), 적극적인 의사 표현, 성실한 자유 의지가 반영된 진정성 있는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법으로 제정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정치인을 포함한 지도층의 막말과 거짓말, 그리고 허무맹랑한 말, 한국 영화나 게임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욕설 등을 제재할 방법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글에 관한 것이다. 말이란 인간이 생각한 바나 느낀 바를 청각적인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고, 글이란 동일한 것을 시각적인 기호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말과 글이란 제각각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어기본법>에는 말의 표기인 글에 관한 언급이 없을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 한자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에 관한 문제 제기 역시 한자 표기 문제가 그 원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즉 문자 사용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방법은 없는지도 논리적·학문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강남옥·박재현(2011), 공공 언어의 수준 평가를 위한 진단 지수 개발 연구, 《人文研究》 62, 123~15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권재일(2004), 특집: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지상중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기본법>, 《한글한자문화》 65, 23~26,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권재일(2010), 세계화 시대의 국어 정책 방향, 《국어국문학》 155, 5~17, 국어국문학회.
- 김명희(2015), 한국의 공공 언어 정책 연구: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권 1호, 91~110, 한국자치행정학회.
- 김재운·노응래·이계진·손봉숙·정종복·박형준·이광철·김재홍·정병국·우상호·이재오·정청래(2004), 특집: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지상중계: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의 질의내용, 《한글한자문화》 65, 28~30,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김준희(2006),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국어 기본법> 이후 달라진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 23, 207~223, 한말연구학회.
- 김진규(2005), <국어기본법>제정의 의의, 《한어문교육》 1, 133~145,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남풍현(2004), 특집: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지상중계: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에 제출하는 의견, 《한글한자문화》 65, 17~20,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박경희(2004), 특집: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지상중계: 방송인의 입장에서 <국어기본법>제정에 동의한다, 《한글한자문화》 65, 20~23,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박용찬(2008), 국어 정책 혁신 방향과 <국어 기본법>-<국어기본법>의 법률로서의 실효성과 의의를 중심으로 -,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 28, 11~35, 한말연구학회.
- 박창원(2010),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이정현

- 국회의원 주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 손원일(2004), 한글+한자문화 칼럼: <국어기본법>은 백해무익, 《한글한자문화》 54, 54~5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손원일(2004), 쫓겨간 특집: 위대한 착각: 국어 기본법은 국민 생각의 통제, 《한글한자문화》 60, 34~39,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손원일(2005), 한글+한자문화 칼럼: <국어기본법>은 도깨비, 《한글한자문화》 66, 69~73,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양명희(2009), 다문화 시대와 언어 정책, 《한국어 교육》 20권 1호, 111~133,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양명희(2014), 국어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 《우리말 글》 60, 27~51, 우리말글학회.
- 이관규(2006), 국어기본법 시대의 국어 정책 방향, 《한글》 272, 221~247, 한글학회.
- 이관희(2010), 공공 기관 서식, 문서의 개선을 위한 국어 정책 시행 방향-국어책 임관 제도의 보완과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 방안-, 《先淸語文》 37 · 38, 209~252,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과.
- 정희창(2014), 어문 규범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 글》 60, 53~73, 우리말글학회.
- 조남호(2007), 국어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경위 및 내용, 《새국어생활》 제17권 제2호(2007년 여름), 48~53, 국립국어원.
- 조태린(2009), 언어 정책에서 법적 규정의 의미와 한계-<국어기본법>다시 보기, 《한말연구》 24, 241~265, 한말연구학회.
- 조태린(2008), 언어 정책에서 법적 규정의 의미와 한계-<국어기본법>다시 보기-,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 28, 91~105, 한말연구학회.
- 조항록(2007), <국어기본법>과 한국어 교육-제정의 의의와 시행 이후 한국어 교육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8권 2호, 401~422,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진재교(2006), <국어기본법>과 한문 교육의 방향-언어 내셔널리즘을 넘어-, 《한문교육연구》 27, 361~396, 한국한문교육학회.
- 진태하(2004),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지상중계: <국어기본법>을 반

대해야 하는 이유, 《한글한자문화》 65, 15~1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
합회.

최대권(2014),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글 전용의 강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55권 4호, 241~27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